

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안광석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49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6일

발 의 자 : 안광석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춘례, 노승재, 김인호,  
박기재, 오한아, 최영주,  
김창원, 김소영, 김호진 의원  
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정관의 규정으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를 상위 조례로 명기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정보편의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음.
- 상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2명, 이사회 추천 2명,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3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그 근거가 없고, 집행부·의회 간 균형·견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그 구성을 시장 추천 3명,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3명으로 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,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3명으로 규정함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부터 제16조를 제10조부터 제17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재단은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과정의 공정성, 전문성,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의 구성에 따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

2.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, 경영전문인,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며, 법인의 임직원, 서울시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⑤ 재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시장 및 시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,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9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재단은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과정의 공정성, 전문성,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의 구성에 따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</li> <li>2.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</li> </ol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, 경영전문인,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며, 법인의 임직원, 서울시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</p> <p>⑤ 재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시장 및 시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</p>

제9조 ~ 제16조 (생략)

회의 운영,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  
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 
다.

제10조 ~ 제17조(현행 제9조부터 제16  
조까지와 같음)